#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2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정진욱ㆍ허성무ㆍ채현일

민형배 · 양부남 · 이개호

조인철 • 박지원 • 안도걸

황명선 • 박해철 • 강준현

이언주 • 문금주 • 오세희

박희승 • 박용갑 • 김 윤

장종태 • 전진숙 • 정일영

안태준 • 정준호 • 이재명

의원(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 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 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 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 및 제3항"을 "절차와 제4항"으로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1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43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 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 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 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생 략)	정보의 반영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린이
	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
	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u>④</u> <u>제1</u>
<u>항</u> 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	<u>항 또는 제2항</u>
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	
하게 할 수 있다.	
<u>④</u> <u>제1항</u> 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⑤ 제1항 및 제2항
방법・ <u>절차 및 제3항</u> 에 따른	<u>절</u> 차와 제 <u>4항</u> -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

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u>공표할 수</u>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한	공	丑)	1						
							<u>-</u> _	3 丑	하	여
	야	한	<u>다</u> .							
	2	• (	3 (	현 행	과 >	같음	)			
제	433	조(	과티	量)	1	다유	<u>)</u>	각	호.	의
	어?	<u> </u>	하니	<b>구에</b>	해┖	강하.	는_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 <삭 제> 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u>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삭 제></u> 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 | <삭 제> 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 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

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 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 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 는 보관한 자

1. ~ 3. (현행과 같음)

<u>는 보관한 자</u>

7. ~ 11. (생 략)

③・④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